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01

발의연월일: 2020. 10. 13.

발 의 자: 송옥주 · 윤미향 · 이용빈

안호영 · 장철민 · 민병덕

윤준병 · 김경만 · 이성만

노웅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시장의 핵심 기준 수립과 능력중심사회의 기반으로서 국가·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이 지속 증대되도록 2010년부 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사업을 주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단의 목적과 사업 범위에 국가직무능력표준 내용이 없어 법적 책임과 수행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단의 설립 목적에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을 추가하고 사업 범위에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활용 지원"을 포함시켜 공단 의 책임 있는 사업수행과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6 조제9호).

법률 제 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숙련기술 장려 사업,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9.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 개선 및 활용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	제1조(목적)
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	
련의 실시, 자격검정, <u>숙련기술</u>	<u>숙련기술 장려</u>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사업,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 고
<u>관한 사업</u> 을 하게 함으로써 산	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	
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	
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제6조(사업)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 신 설 ></u>	9.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
	<u>선 및 활용 지원</u>
<u>9.</u> 제1호부터 <u>제8호</u> 까지의 사업	<u>10</u> . 제1호부터 <u>제9호</u> 까지의 사
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이나 그	업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이나
밖의 부대사업	그 밖의 부대사업
<u>10.</u> ~ <u>11.</u> (생 략)	<u>11.</u> ~ <u>12.</u> (현행과 같음)